



제1장

농업재해보험제도

제1절 농작물재해보험

제2절 농업수입보장보험

제3절 가축재해보험

제4절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제1장 |

농업재해보험제도¹⁾

제1절 농작물재해보험

1. 개관

1.1 사업목적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2 근거법령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다.

1.3 사업대상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며,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1) 농업재해보험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보험들은 각기 도입 시기는 다르나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은 같다.

1.4 추진경과

연 도 별	주 요 내 용
1975~1992년	• 농업재해보험제도 연구 및 시범사업·도상연습 등 시행
2000년 3월	•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
2001년 1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
3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 사과·배 시범사업 실시
2002년 4월	• 복숭아·포도·단감·감귤 시범사업 실시
2003년 3월	• 사과·배 전국적 본사업 실시
2004년 3월	• 복숭아·포도·단감·감귤 전국적 본사업 실시
2005년 1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국가재보험 도입 및 기금 설치)
6월	•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설치
2006년 5월	• 뽕은감 시범사업 실시
2007년 9월	• 밤·참다래·자두 시범사업 실시
2008년 3월	• 뽕은감 전국적 본사업 실시
5월	• 고추·콩·감자·양파·시설수박 시범사업 실시
2009년 3월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공포
5월	• 벼·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시범사업 실시
2010년 1월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농작물재해보험법 전면 개정)
	• 농어업재해보험사업(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시작
	• 복숭아·포도 전국사업 실시
4월	• 대추 시범사업 실시
8월	• 시설딸기 및 농업용시설(비닐온실) 시범사업 실시
9월	• 시설오이 시범사업 실시
10월	• 시설토마토 시범사업 실시
12월	• 시설참외 시범사업 실시
2011년 11월	• 참다래·콩·양파·자두 본사업 실시
	• 복분자 시범사업 실시
12월	• 시설작물(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시범사업 실시
2012년 9월	• 밤·옥수수·고구마·감자·마늘·매실 본사업 실시
	• 인삼·시설작물(멜론, 파프리카)·오디·녹차 시범사업 실시
2013년 9월	• 대추·시설작물(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수박) 본사업 실시
	• 시설작물(부추, 시금치, 상추)·느타리버섯·표고버섯 시범사업 실시
	• 벼 전국사업 실시
11월	• 배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4년 10월	• 고추·농업용시설물 본사업 실시
	• 시설작물(배추, 가지, 파) 시범사업 실시
11월	• 단감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5년 10월	• 시설작물(파프리카, 멜론) 본사업 실시
	• 시설작물(무, 백합, 카네이션) 시범사업 실시
	• 시설작물(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전국사업 실시
11월	• 사과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6년 10월	• 포도·시설작물(부추, 시금치, 상추) 본사업 실시
	• 양배추·밀·오미자·시설작물(미나리) 시범사업 실시
	• 시설작물(무, 백합, 카네이션) 전국사업 실시
11월	• 뽕은감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7년 2월	• 인삼·버섯(느타리, 표고)·시설작물(배추, 가지, 파)·배(적과전)·벼 본사업 실시
7월	• 시설썩갓·무화과·유자 시범사업 실시
2018년 2월	• 새송이버섯·양송이버섯 시범사업 실시, 시설작물(무, 백합, 카네이션) 본사업 실시
7월	• 브로콜리·메밀 시범사업 실시
11월	• 복숭아 본사업 실시
2019년 1월	• 시설작물(미나리) 본사업 실시
4월	• 단호박·고랭지배추·고랭지무·대파 시범사업 실시
7월	• 당근 시범사업 실시
9월	• 월동배추·월동무·쪽파(싹파) 시범사업 실시
2020년 1월	• 시설작물(썩갓), 밀 본사업 실시
4월	• 호두 시범사업 실시
6월	• 참다래 전국사업 실시
	• 팔 시범사업 실시
10월	• 보리·시금치 시범사업 실시
11월	• 살구 시범사업 실시

1.5 국고 지원 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단, 아래 5개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순보험료의 40~60% 차등 보조). 보험가입자별 지원 한도는 별도로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분	품 목	보장수준(%)				
		60	70	80	85	90
국고보조율	벼	60	55	50	50	50
	사과·배·단감·딸은감	-	60	50	40	40

1.6 연도별 보험사업 운영 현황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험가입 농가수 및 가입면적 등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가입률이 45.0%로 전년보다 6.2%p가 증가하였다.

[표 1-1-1] 연도별 농작물

(단위 : 개, %, 천건, 천ha, 억원)

구 분		2001~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험품목	품목수(누계)	25	30	35	40	43	46	50	53	57	62	67
	신규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딸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대추, 시설(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시설 (꽃고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시설 (파프리카, 멜론), 인삼, 오디, 차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시금치, 부추, 상추)	시설 (배추, 가지, 파)	시설 (무, 백합, 카네이션)	시설 미나리,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 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배추, 무, 단호박, 당근, 파	호두, 팔, 보리, 시금치, 살구
대상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나무피해 등 (2007년 이후 추가 품목은 전위험 ¹⁾)	작동	작동(인삼 특정 위험)	작동(버섯 특정 위험)	작동	작동	작동	작동 (버섯, 감귤종합 위험)	작동	작동	작동
국고 지원율	보험료	30~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운영비	50~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보험가입 실적	건수	8~53	68	75	95	89	121	179	191	330	398	515
	면적	4~53	87	108	160	134	184	296	317	377	456	550
	가입률	17.5~13.0	15.0	13.6	19.1	16.1	21.5	27.4	29.7	32.9	38.8	45.0
보험료	총 보험료	34~897	1,161	1,578	2,370	2,343	3,091	3,450	3,347	5,507	5,122	7,238
	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	30~864	1,110	1,516	2,269	2,340	3,085	3,447	3,343	5,501	5,111	7,222
	위험보험료	30~864	1,110	1,375	2,057	2,166	2,880	3,232	3,142	5,180	4,822	6,747
보험금 지급 실적	건수	0.4~18.0	25.1	59.5	10.6	15.3	7.2	23.2	33.2	85.1	190.5	225.2
	지급액	14~903	1,326	4,910	451	1,450	524	977	2,796	5,345	8,980	10,158
	손해율 ²⁾	45.7~104.6	119.5	357.1	21.9	66.9	18.2	30.0	89.0	103.2	186.2	150.6

주 : 1) 전위험 : 병충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자연재해, 화재 등)를 보상하는 방식(현재 종합위험방식과 동일)

2) 손해율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금÷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100, (2012년 이후) 보험금÷위험보험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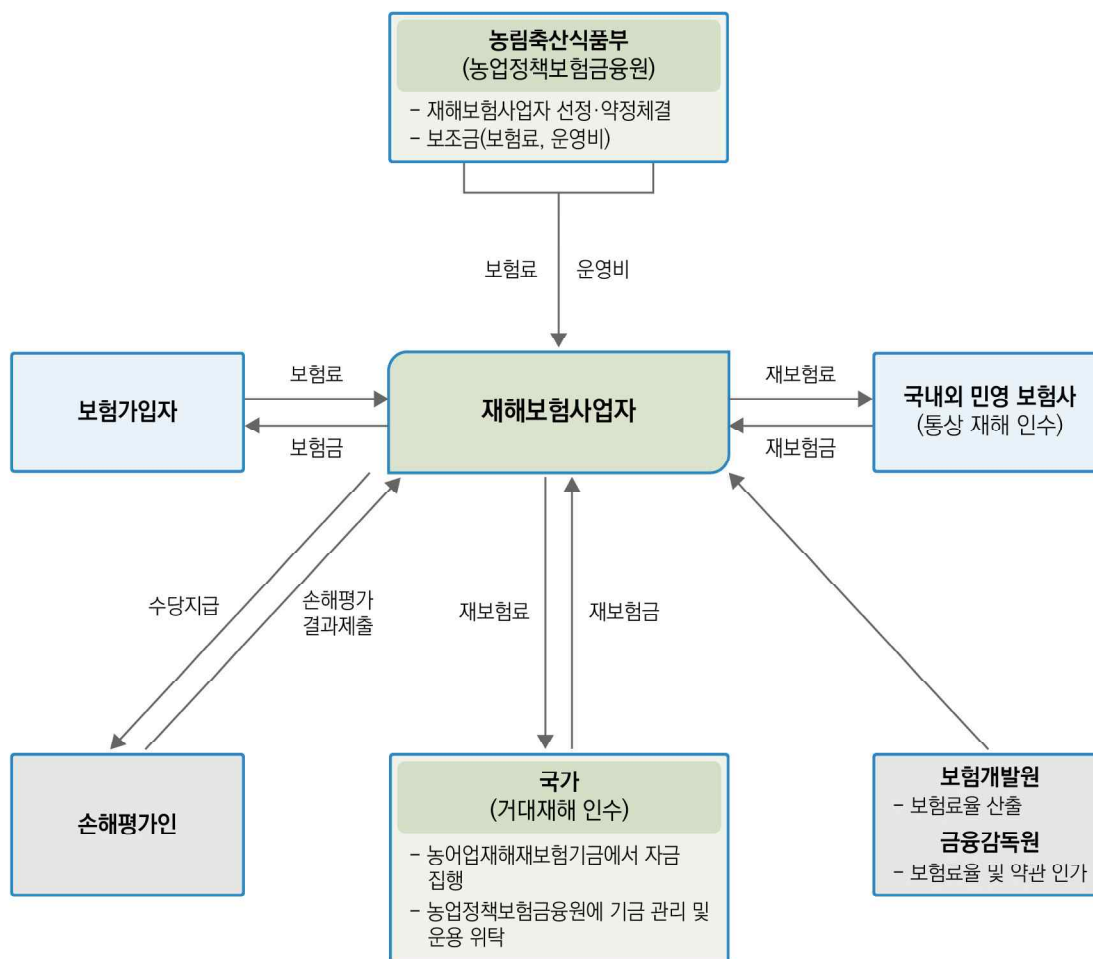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운영 체계

2.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체계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통계 생산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 주체가 되며, 보험개발원 등은 보험상품별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율과 약관 등을 인가하고, 국가 및 국내외 민영 보험사는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체계도



2.2 기관별 주요 역할

농작물재해보험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재보험료를 책정, 재해보험사업자 관리·감독, 국가재보험 인수, 농업재해보험기금 집행 및 운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농업재해보험 기금 운용,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금융감독원	보험료를 및 약관 인가
보험개발원	보험료를 산출
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보험상품 개발(보험료율, 보험약관), 보험판매(가입자), 손해평가
국내외 재보험사	재보험 인수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보험사업자가 의뢰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제출

3. 추진 절차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3.1 표준프로세스(SP)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환류 등 표준프로세스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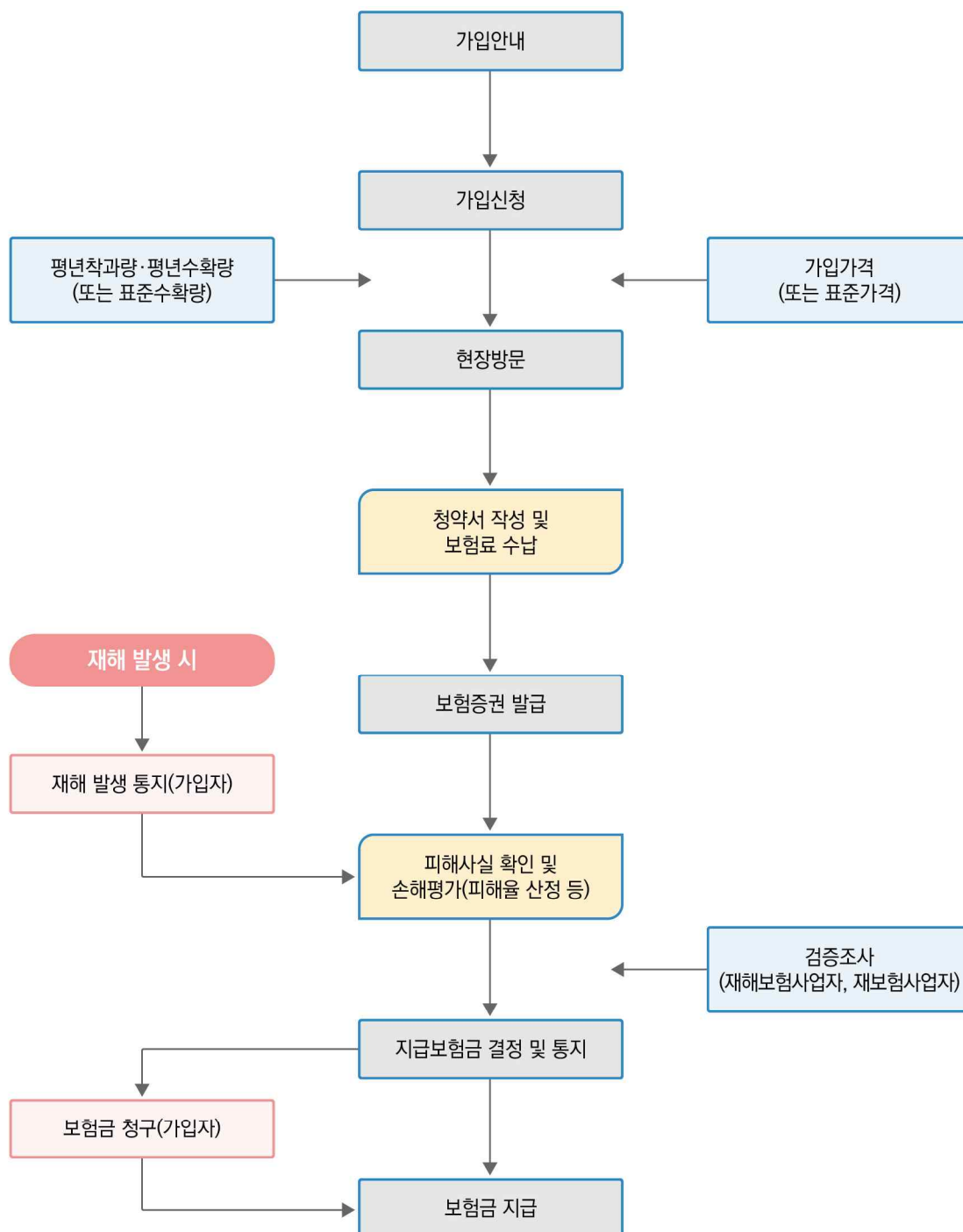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1. 사업신청 단계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 자에 시달(2.10까지)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 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 재해 보험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 체결 (법 제8조), 재보험사업약정 체결 (법 제20조) 실시	- 재해보험 보험료율, 보험약관, 상품별 홍보계획 등 세부 시행계획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 축협(이하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보험약관 변경 시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 점검, 상품 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대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 교육·홍보 실시
3. 자금배정 단계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 재해 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 농업 정책보험금융원의 자금배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자금배정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 운영비 사용계획서(집행계획) 수립 - 지출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 통보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 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 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 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 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 가입자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실적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 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제 재〉	부당·위법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 사업자 등에게 통보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악정사항 미이행 등
▼			
5. 성과측정 단계 〈성과지표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 가입농가수 및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면적, 가입농가수, 대상품목 증가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가입면적, 가입농가수 및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측정		
〈만족도 조사〉	-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 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3월 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15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 류〉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3.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도



4. 농작물재해보험상품

품목	연혁			보장 방식	대상재해	자기부담비율(%)
	도입	전국	본사업			
사과	2001	2001	2003	적과전 ¹⁾ 종합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특) 나무손해 보장	10, 15, 20, 30 (특) 나무 : 5%
배	2001	2001	2003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11.30일 이전) (특)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10, 15, 20, 30, 40
단감	2002	2004	2004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멜론감	2006	2008	2008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	30만 원 ≤ X ≤ 100만 원 (X = 손해액의 10%)
감귤	2002	2004	2004	종합 ²⁾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대추	2010	2013	2013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병충해-7종(원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벚멸구, 도열병, 깨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 3%, 5% 10, 15, 20, 30, 40
밤	2007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고추	2008	2014	2014	종합생산비 ³⁾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벼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10, 15, 20, 30, 40
옥수수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 (특) 나무손해 보장	10, 15, 20, 30, 40 (특) 나무 : 5%
고구마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감자	2008	2011	2011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특) 화재	30만 원 ≤ X ≤ 100만 원 (X = 손해액의 10%)
참다래	2007	2020	2011	종합	소손해면책금 10만 원	10, 15, 20, 30, 40 (특) 나무 : 5%
콩	2008	2011	2011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버섯재배사	2013	2016	2017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특) 화재	30만 원 ≤ X ≤ 100만 원 (X = 손해액의 10%)
표고버섯	2013	2016	2017			소손해면책금 10만 원
느타리버섯	2013	2016	2017			
새송이버섯	2018	2018	-			
양송이버섯	2018	2018	-			

주 : 1)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방식 : 적과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과 적과후에 발생하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등의 피해로 보상하는 상품

2) 종합위험 보장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3) 생산비 보장방식 : 보험대상목작물이 시설작물 또는 농업용시설물인 경우는 생산비 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를 보장하는 방식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본부

보험금지급	보험기간	판매시기	대상지역	품목
과실손해	(적과전) 계약체결일~적과 종료 시점 (사과·배 6.30일한, 단감·뽕은감 7.31일한) (적과후) -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 적과후~수확기 종료(11.30일한) - 가을동상해 : 9.1~수확기 종료 (사과·배 11.10일한, 단감·뽕은감 11.15일한) - 일소피해 : 적과후~9.30일 (나무손해 보장 특약) 3.1~이듬해 1.31	1.13~3.13	전국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과실손해 (특) 동상해 (특) 나무손해	발아기~11월 30일 12.1일~이듬해 2월 말일 발아기~이듬해 2월 말일	4.27~5.15	전국	감귤
수확감소	신초발아기~수확기 종료(10.31일한)	4.27~5.15	전국	대추
수확감소	발아기~수확기 종료(10.31일한)	4.27~5.15	전국	밤
생산비 보장	계약체결일 24시~정식일 이후 150일째 되는 날	4.20~5.22	전국	고추
이앙·직파불능 재이앙, 재직파 경작불능 ¹⁾ 수확감소 수확불능	계약체결일 24시~7월 31일까지 이앙완료일 24시~7월 31일까지 이앙완료일 24시~수확 개시 시점(조사료용 8.31) 이앙완료일 24시~수확기 종료(11.30일한) 이앙완료일 24시~수확기 종료(11.30일한)	5.11~6.26	전국	벼
수확감소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수확기 종료(9.30일한)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4.27~6.12	전국	옥수수
수확감소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10.31일한)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4.27~6.12	전국	고구마
(봄) 수확감소 경작불능	파종완료일 24시~수확기 종료(7.31일한) 파종완료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4.20~5.8	경북, 충남	감자
(고랭지) 수확감소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10.31일한)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5.11~6.5		
(가을) 수확감소 경작불능	파종완료일 24시~수확기 종료(제주 12.15일한, 제주 외 11.30일한) 파종완료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7.22~8.21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주) 꽃눈분화기~수확기 종료(11.30일한) (특) 7.1일~이듬해 6.30일	6.1~7.3	전국	참다래
수확감소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11.30일한)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6.15~7.24	전국	콩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할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2.24~11.27	전국	버섯재배사
생산비 보장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주 : 1) 경작불능 :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음

품목	연혁			보장 방식	대상재해	자기부담비율(%)
	도입	전국	본사업			
마늘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매실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나무손해 보장	10, 15, 20, 30, 40 (특) 나무 : 5%
인삼	2012	2016	2017	특정	(주)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10, 15, 20, 30, 40
					(해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만 원 ≤ X ≤ 100만 원 (X = 손해액의 10%)
오디	2012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차	2012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복분자	2011	-	-	종합	(주)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10, 15, 20, 30, 40
양파	2008	2011	2011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자두	2007	2011	2011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나무손해 보장	10, 15, 20, 30, 40 (특) 나무 : 5%
포도	2002	2010	2016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 (특) 나무손해 보장	10, 15, 20, 30, 40 (특) 나무 : 5%
복숭아	2002	2010	2018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세균성구멍병) (특) 나무손해 보장	10, 15, 20, 30, 40 (특) 나무 : 5%
양배추	2016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밀	2016	-	2020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오미자	2016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무화과	2017	-	-	종합	(주)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특) 나무손해 보장	10, 15, 20, 30, 40 (특) 나무 : 5%
유자	2017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나무손해 보장	20, 30, 40 (특) 나무 : 5%
메밀	2018	-	-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브로콜리	2018	-	-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잔존보험가입금액 3, 5%
배추	2019	-	-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무	2019	-	-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단호박	2019	-	-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당근	2019	-	-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파	2019	-	-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호두	2020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팥	2020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보리	2020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시금치	2020	-	-	종합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살구	2020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보험금지급	보험기간	판매시기	대상지역	품목
재파종 경작불능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10월 31일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6.30일한)	(난지형) 10.5~10.30 (한지형) 10.5~11.27	전국	마늘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7.31일한) (특) 판매개시연도 12.1일~이듬해 11.30일	11.5~11.27	전국	매실
인삼손해 해가림시설손해	(1형) 5.1일~이듬해 4월 30일 24시 (2형) 11.1일~이듬해 10월 31일 24시	(1형) 4.27~5.29 (2형) 10.5~11.27	전국	인삼
과실손해	계약체결일 24시~결실 완료 시점(5.31일한)	11.5~11.27	전북, 전남, 경북(상주, 안동)	오디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햇차 수확 종료 시점(5.10일한)	10.5~11.6	주산지 (4개 시·군)	차
경작불능 과실손해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이듬해 5.31일한) (5.31일 이전) 계약체결일 24시~이듬해 5.31일한 (6.1일 이후) 이듬해 6.1일~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6.20일한)	11.5~11.27	주산지 (6개 시·군)	복분자
경작불능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6.30일한)	10.26~11.27	전국	양파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9.30일한) (특) 판매개시연도 12.1일~이듬해 11.30일	11.5~11.27	전국	자두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10.10일한) 판매개시연도 12.1일~이듬해 11.30일	11.9~12.4	전국	포도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주)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10.10일한) 판매개시연도 12.1일~이듬해 11.30일	11.5~11.27	전국	복숭아
경작불능 재정식보장 수확감소	정식완료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정식완료일 24시~재정식 종료 시점(10.15일한) 정식완료일 24시~수확기 종료(극조생·조생 이듬해 2.28, 중생 이듬해 3.15, 만생 이듬해 3.31일한)	7.22~8.21	제주, 서귀포	양배추
경작불능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충남 6.30일한, 이외 지역 6.20일한)	10.12~11.27	전북, 전남, 경남, 충남, 광주	밀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이듬해 10.10일한)	11.5~11.27	주산지 (7개 시·군)	오미자
과실손해 (특) 나무손해	(주) (7.31일 이전) 계약체결일 24시~(Y+1)년 7월 31일 (8.1일 이후) (Y+1)년 8월 1일~수확기 종료 시점(11.20일한) (특) Y년 12월 1일~(Y+1)년 11월 30일	11.5~11.27	주산지 (5개 시·군)	무화과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이듬해 10.31일한) 판매개시연도 12.1일~이듬해 11.30일	11.9~12.18	주산지 (6개 시·군)	유자
경작불능 생산비용	파종완료일 24시~최초 수확 직전(11.20일한)	7.22~8.28	전남, 제주	메밀
생산비용	정식완료일 24시~정식일로부터 160일 24시	7.22~8.21	제주, 서귀포	브로콜리
생산비용 경작불능	(고령지배주) 정식일 24시~정식일로부터 70일째 되는 날의 24시 (월동배추) 정식완료일 24시~최초 수확 직전	(고령지) 4.29~6.21 (월동) 8.31~10.8	(고령지) 강원 5개 시·군 (월동) 전남(해남)	배추
생산비용 경작불능	(고령지무) - 계약체결일 24시와 파종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파종완료일로 부터 80일째 되는 날의 24시 - 계약체결일 24시와 파종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수확 개시 직전 (월동무) 계약체결일 24시와 파종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최초수확 직전	(고령지) 4.27~6.26 (월동) 8.31~10.23	(고령지) 강원 4개 시·군 (월동) 제주, 서귀포	무
생산비용	정식완료일 24시~정식일로부터 90일 24시	4.20~5.29	경기	단호박
생산비용	파종완료일 24시~최초 수확 직전	7.22~8.21	제주, 서귀포	당근
생산비용 경작불능	(대파) 정식완료일 24시~정식일로부터 200일 24시 정식완료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쪽파, 실파) 파종완료일 24시~최초 수확 직전 파종완료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대파) 4.27~6.19 (쪽파, 실파) 8.31~10.23	(대파) 전남 진도, 신안 (쪽파, 실파) 충남 아산, 전남 보성	파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9.30일한)	4.27~5.15	경북 김천	호두
경작불능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종실 비대기 전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11.13일한)	6.15~7.17	주산지 (3개 시·군)	팥
경작불능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6.30일한)	10.12~11.27	주산지 (5개 시·군)	보리
생산비용 경작불능	파종완료일 24시~최초 수확직전(이듬해 1.15일한)	10.5~11.6	주산지(2개 시·군)	시금치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7.20일한) (특) 판매개시연도 12.1일~이듬해 11.30일	11.5~11.27	경북 영천	살구

4.1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품목	연혁			보장 방식	대상재해	자기부담비율(%)
	도입	전국	본사업			
농업용 시설물	2010	2013	2014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특) 화재, 화재대물배상 책임, 수재위험부보장	30만 원 $\leq$ X $\leq$ 100만 원 (X = 손해액의 10%)
딸기	2010	2013	2013	종합 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특) 화재, 화재대물배상 책임, 수재위험부보장	소손해면책금 10만 원
오이	2010	2013	2013			
토마토	2010	2013	2013			
참외	2010	2013	2013			
꽃고추	2011	2013	2013			
호박	2011	2013	2013			
국화	2011	2013	2013			
장미	2011	2013	2013			
수박	2008	2013	2013			
멜론	2012	2015	2015			
파프리카	2012	2015	2015			
상추	2013	2015	2016			
부추	2013	2015	2016			
시금치	2013	2015	2016			
배추	2014	2015	2017			
가지	2014	2015	2017			
파	2014	2015	2017			
무	2015	2016	2018			
백합	2015	2016	2018			
카네이션	2015	2016	2018			
미나리	2016	2016	2018			
쑥갓	2017	2017	-			

보험금지급	보험기간	판매시기	대상지역	품목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할 때~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2.24~11.27	전국	농업용 시설물
피해금액 10만 원 이상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할 때~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2.24~11.27	전국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제2절 농업수입보장보험

1. 개관

1.1 사업목적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2 근거법령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다.

1.3 사업대상자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가 판매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4 추진경과

연 도 별	주 요 내 용
2012년 6월 7월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의견수렴 위한 농식품부 정책조정심의회 개최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검토 TF 출범(농식품부, KREI, 보험개발원, NH농협손보 등 7개 보험사)
2012년 9월 11월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KREI)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3년 3월	농업수입보장보험 6개 품목(포도·양파·사실오이·콩·배추·한우) 1차 도상연습 실시
2014년 3월	농업수입보장보험 5개 품목(벼·마늘·고구마·시설토마토·감귤) 2차 도상연습 실시
2015년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3개 품목(콩·포도·양파) 14개 시·군 대상 시범사업 실시
2016년	4개 품목(콩·포도·양파·마늘) 22개 시·군 대상 시범사업 실시
2017년	6개 품목(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감자) 30개 시·군 대상 시범사업 실시
2018년	7개 품목(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35개 시·군 대상 시범사업 실시

1.5 국고 지원 내용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별 지원 한도는 별도로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6 연도별 보험사업 운영 현황

201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 중이며, 2020년에는 가입률이 4.2%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다.

[표 1-1-2] 연도별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영 현황(2015~2020)

(단위 : 개, %, 건, ha,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험품목	품목수 (누계)	3	4	6	7	7	7
	신규품목	포도, 양파, 콩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좌동	좌동
대상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국고 지원율	보험료	50	50	50	50	50	50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100
보험가입 실적	건수	2,010	1,797	6,040	2,278	1,958	2,292
	면적	1,643	1,487	4,496	2,121	1,207	1,561
	가입률	7.8	5.8	20.3	7.3	3.7	4.2
보험료	총 보험료	5,698	5,354	27,330	7,295	6,619	6,642
	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	5,697	5,339	27,328	7,291	6,579	6,638
	위험보험료	5,320	4,784	24,378	6,504	5,880	6,184
보험금지급 실적	건수	115	1,197	1,500	5,595	1,662	1,153
	지급액	407	4,560	7,676	49,763	10,912	3,451
	손해율 ¹⁾	7.7	95.3	31.5	765.1	185.6	55.8

주 : 1) 손해율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금÷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100, (2012년 이후) 보험금÷위험보험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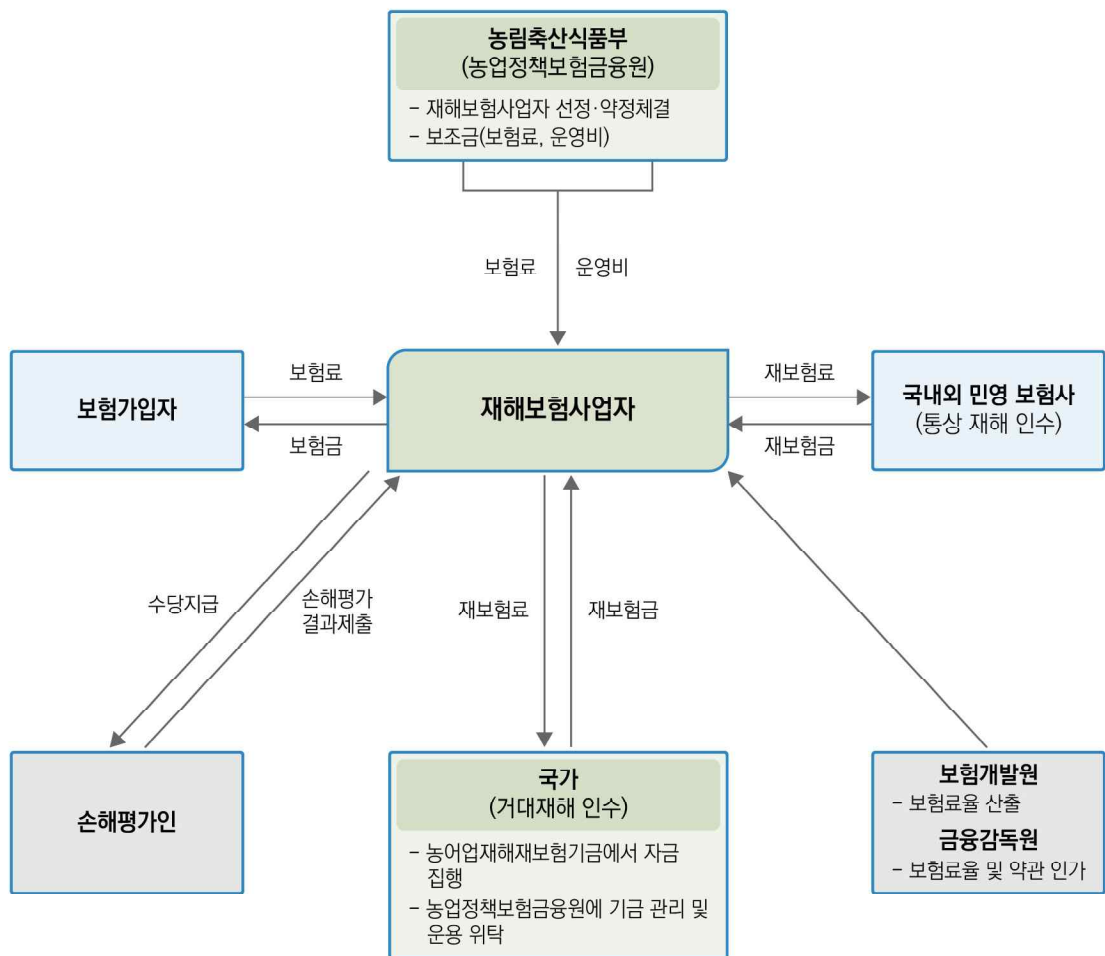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운영 체계

2.1 농업수입보장보험 추진 체계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자 선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통계 생산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보험사업자인 NH농협 손해보험은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주체가 되며, 보험개발원 등은 보험상품별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율과 약관 등을 인가하고, 국가와 국내외 민영 보험사는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3] 농업수입보장보험 추진 체계도



2.2 기관별 주요 역할

농업수입보장보험 관련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자 선정, 보험료·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재보험료를 책정,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자 관리·감독, 국가재보험 인수, 농업재해보험기금 집행 및 운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농어업재해보험 기금 운용,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 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가재보험사업 운영
금융감독원	보험료를 및 약관 인가
보험개발원	보험료를 산출
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보험상품 개발(보험료를, 보험약관), 보험판매(가입자), 손해평가(평가 의뢰)
국내외 보험사	재보험 인수
손해사정법인, 손해평가인	보험사업자가 의뢰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제출

3. 추진 절차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3.1 표준프로세스(SP)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환류 등 표준프로세스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1. 사업신청 단계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보험사업자에 시달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 개선 협의회 운영, 대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 -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 체결(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법 제20조) 실시	- 보험료율, 보험약관, 상품별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 계획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이하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 - 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보험약관 변경 시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 보험사업자는 농업수입보장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보험사업자의 농업수입보장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대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3. 자금배정 단계	보험사업자의 농업수입보장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금배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자금배정	- 보험사업자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 보고 -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영비 사용계획서(집행계획) 수립 - 지출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자금배정 신청 - 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자금집행 - 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 정산 - 보험사업자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자금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점검항목 - 사업실적 :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 실적 등	- 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업수입보장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 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제 재〉	부당·위법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자 등에게 통보	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5. 성과측정 단계 〈성과지표측정〉	- 매년 농업수입보장보험의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측정
〈만족도 조사〉	-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 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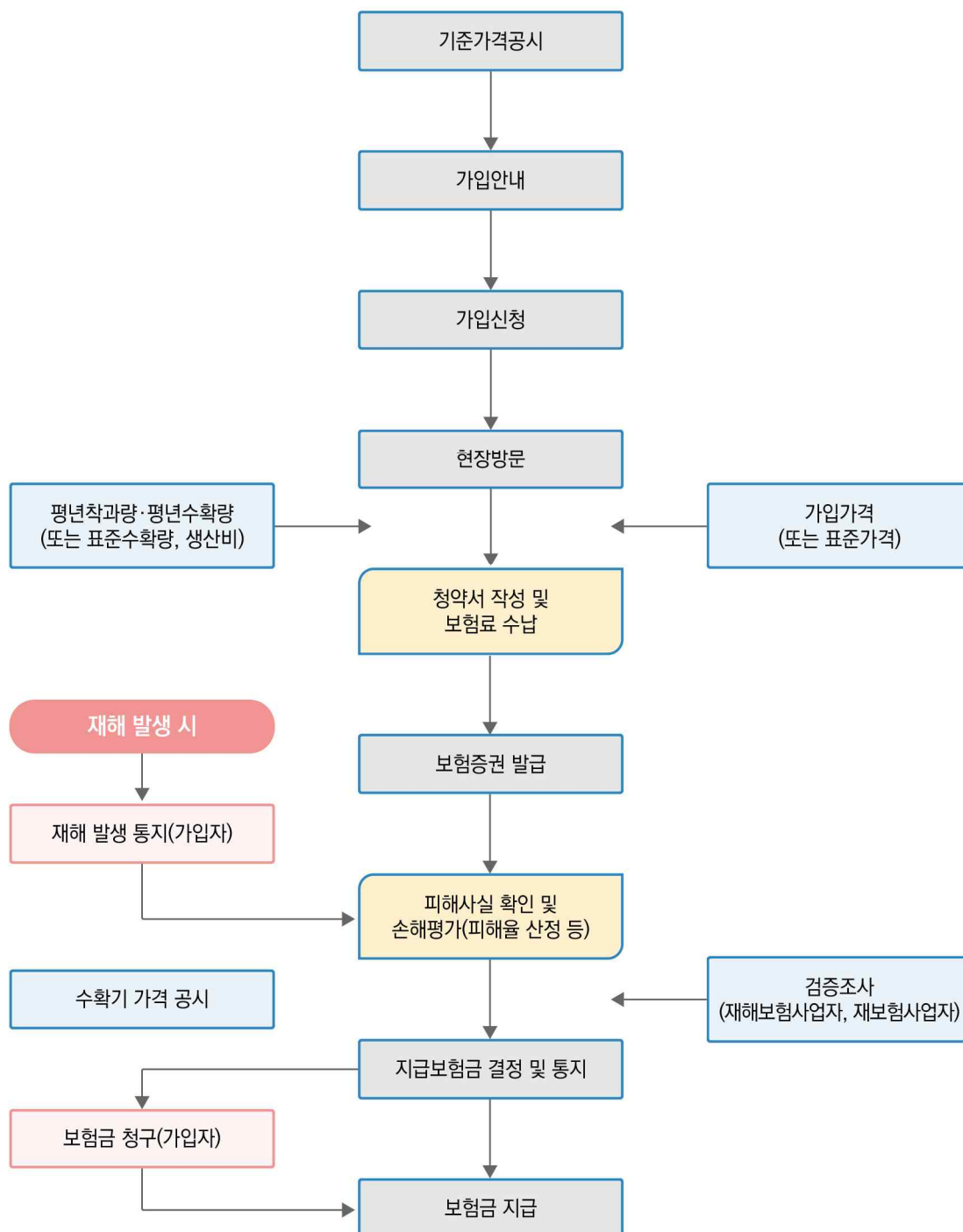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3월 중) - 보험사업자는 매 연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 류〉	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3.2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

농업수입보장보험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4]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도



4. 농업수입보장보험상품

품목	연혁			보장 방식	대상재해	자기부담비율(%)
	도입	전국	본사업			
콩	2015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10, 15, 20, 30, 40
포도	2015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특) 나무손해 보장, 비가림시설(화재)	10, 15, 20, 30, 40
양파	2015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10, 15, 20, 30, 40
마늘	2016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10, 15, 20, 30, 40
고구마	2017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10, 15, 20, 30, 40
가을감자	2017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10, 15, 20, 30, 40
양배추	2018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20, 30, 40

보험금지급	보험기간	판매시기	대상지역	품목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6.15~7.24	주산지 (7개 시·군)	콩
농업수입감소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 시점(다만, 11.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격하락 :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농업수입감소	(포도)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격하락 :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비가림) 계약체결일 24시~10월 10일	11.9~12.4	주산지 (6개 시·군)	포도
(특) 나무손해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이듬해 11월 30일 (다만, 12.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특)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경작불능	아래 세 개의 일시 중 가장 늦은 일시~수확 개시 시점 ①11월 1일 0시 ②계약체결일 24시 ③파종완료일 24시	10.26~11.27	주산지 (6개 시·군)	양파
농업수입감소	아래 세 개의 일시 중 가장 늦은 일시~수확기 종료 시점 ①11월 1일 0시 ②계약체결일 24시 ③파종완료일 24시 (다만, 6.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격하락 :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재파종	아래 세 개의 일시 중 가장 늦은 일시~10월 31일 ①11월 1일 0시 ②계약체결일 24시 ③파종완료일 24시	(난지형) 10.5~10.30 (한지형) 10.5~11.27	주산지 (7개 시·군)	마늘
경작불능	아래 세 개의 일시 중 가장 늦은 일시~수확 개시 시점 ①11월 1일 0시 ②계약체결일 24시 ③파종완료일 24시			
농업수입감소	아래 세 개의 일시 중 가장 늦은 일시~수확기 종료 시점 ①11월 1일 0시 ②계약체결일 24시 ③파종완료일 24시 (다만, 6.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격하락 :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4.27~6.12	주산지 (6개 시·군)	고구마
농업수입감소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격하락 : 계약체결일 24시~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경작불능	파종완료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다만,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7.22~8.21	주산지 (1개 군)	가을감자
농업수입감소	파종완료일 24시~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수확기 종료 시점은 11.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격하락 : 파종완료일 24시~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재정식 보장	정식완료일 24시~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재정식 종료 시점은 10월 15일 초과할 수 없음)	7.22~8.21	주산지 (2개 시·군)	양배추
경작불능	파종완료일 24시~수확 개시 시점 (다만,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1. 개관

1.1 사업목적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1.2 근거법령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다.

1.3 사업대상자

가축재해보험의 사업대상자는 원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4 추진경과

연 도 별	주 요 내 용
1956년	• 농업은행 가축공제사업 수행 '농경우공제사업'
1961년	• 농업은행 → 농협으로 승계
1963년	• 임의가입 허용
1964년	• 젖소 공제 실시
1981년	• 일반가축공제(축협중앙회), 특수가축공제(농협) 실시
1997년	• (구)축협에서 정부 지원하에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작 • 가축공제 활성화 및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납입공제료의 50%를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지원
2000년	• 돼지, 말 보험 실시
2002년	• 닭 보험 실시
2004년	• 오리 보험 실시
2005년	• 평, 메추리 보험 실시
2006년	• 칠면조, 사슴 보험 실시
2007년	• 가축공제(보험) 경쟁체제 도입·민영 보험사(KB컨소시엄) 참여 허가 • 거위, 타조 보험 실시

연 도 별	주 요 내 용
2008년	• 양(염소) 보험 실시
2010년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으로 정부 재정지원은 '축산업발전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변경 • 꿀벌, 토끼 보험 실시
2011년	• 관상조 보험 실시
2012년	• 오소리 보험 실시
2016년	•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3개 민영 보험사 참여 허가
2017년	• 현대해상화재보험 민영 보험사 참여 허가
2018년	• 동물복지인증농가 보험료 할인 • 구내폭발 특약 신설 • 꿀벌 질병담보·잔존물 처리비용(랜더링) 추가 담보 • 주계약 담보 우박 및 지진피해 포함 • 전기안전점검등급 우수농가 보험료 할인제도 신설 • 제주 경주마 요율 신설
2019년	• 지역별 차등요율제 폐지 • 보험료 할인·할증 폭 확대 • 가금 보험가액 산정 기준 개정 • 꿀벌 사고다발자 인수조건 강화를 위한 자기부담금 다양화 • 꿀벌 병성검사 및 면책기간 도입
2020년	• 국고 지원 상한제 도입(5천만원)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에만 국고 지원 • ASF 관련 정부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해 정부 지원 강화 • 돼지 총빈돈 정의 명확화 • 산란계 보험가액 산정 기준 개정

1.5 국고 지원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업인이 보험가입 시 납부하는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20~4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외국산 경주마 지원 제외).

1.6 연도별 보험사업 운영 현황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소’ 1개 축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연차적으로 보험대상 축종을 확대한 결과 2012년부터는 16개 축종(보험화율 76%)에 이르고 있다. 2020년 기준 21.8천 농가, 2억 7,649만 마리가 가입함으로써 92.8%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0년 보험금 지급건수는 3만 4,73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3.5%) 감소하였고, 지급금액과 손해를 또한 1,477억 원, 80.8%로 전년 대비 15.2%, 18.8%p 감소하였다.

[표 1-1-3] 연도별 가축재해보험 운영 현황(1997~2020)

(단위 : 개, %, 천호, 천마리, 억원, 천건)

구 분		1997~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험 품목	축종수 (누계)	1~14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신규 도입 축종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염소), 꿀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	-	-	-	-	-	-	-
대상재해		풍수해, 화재, 질병 등										
국고 지원율	보험료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운영비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보험 가입 실적	가입 농가수	0.2~11.5	12.2	11.3	11.4	11.3	12.3	14.3	16.4	19.7	21.4	21.8
	가입 마릿수	35~80,479	95,950	128,806	163,325	218,517	219,940	253,355	268,381	278,383	284,785	276,486
	가입률	0.3~53.1	54.5	71.4	77.3	89.1	90.7	92.4	92.9	93.0	93.3	92.8
보험료	총 보험료	8~656	796	1,002	1,053	1,014	1,120	1,267	1,503	1,907	2,189	2,284
	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	8~641	759	979	1,025	983	1,099	1,231	1,468	1,874	2,149	2,257
	위험 보험료	7~513	607	783	820	789	902	1,009	1,203	1,533	1,749	1,829
보험금 지급 실적	건수	0.4~17.2	13.1	16.4	15.2	10.6	12.6	16.4	22.0	32.3	35.9	34.7
	지금액	3~483	494	693	657	693	885	1,254	1,292	2,393	1,743	1,477
	손해율 ¹⁾	49.1~94.1	81.4	88.5	80.2	87.9	98.1	124.2	107.4	156.1	99.6	80.8

주 : 1) 손해율 : 보험금÷위험보험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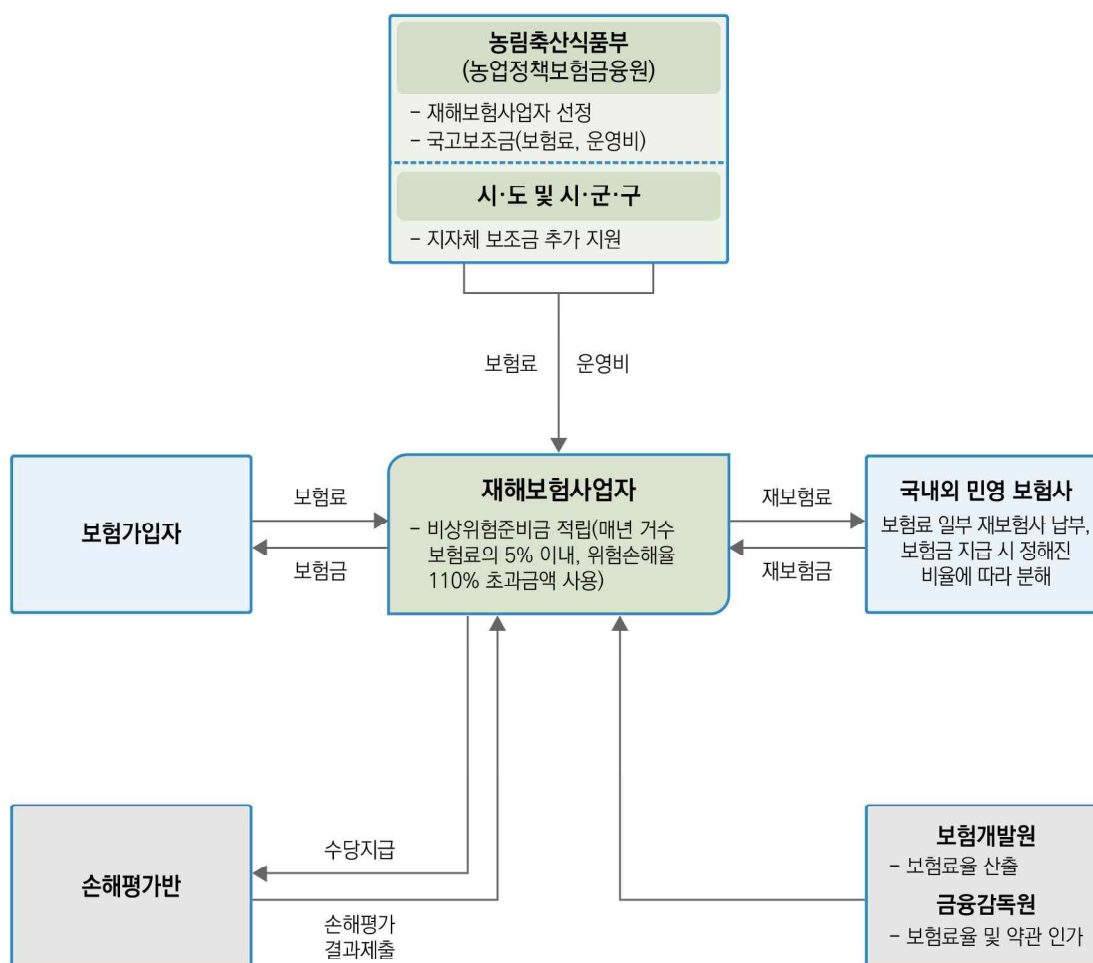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운영 체계

2.1 가축재해보험의 추진 체계

가축재해보험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지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통계 생산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주체가 되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별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율과 약관 등을 인가하고, 국내외 민영 보험사는 재보험을 인수하여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5] 가축재해보험 추진 체계도



2.2 기관별 주요 역할

가축재해보험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요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재보험료를 책정, 농업재해보험기금 집행 및 운용(위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금융감독원	보험료율 및 약관 인가
보험개발원	보험료율 산출
보험사업자 ¹⁾	보험상품 개발(보험료율, 보험약관), 보험판매(가입자), 손해평가(평가 의뢰)
손해평가 관련 법인	보험사업자가 의뢰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주 : 1)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3. 추진 절차

가축재해보험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3.1 표준프로세스(SP)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환류 등 표준 프로세스 단계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1.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및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시·도, 농금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기 전 지자체, 보험사 등 관련 기관 및 축산농가 설문조사 등 사전 의견수렴 시행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 개선협의회 운영, 위험관리 점검 회의 개최, 대농업인 재해보험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 체결 실시(법 제8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계획을 근거로 보험료율, 보험약관 등 세부사업계획을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변경 1개월 전에 제출하고 지역 대리점, 농협, 낙·축협 영업점 등에 통보하여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및 보험약관 변경 시 농금원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전산화에 따른 업무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고, 확정된 지방비 지원 및 처리 기준을 정하여 12월 중순까지 시·도, 농금원,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사업점검, 상품 개선협의회 운영,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 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하여 홍보 철저 - 연초 지자체 직원 및 각종 협회, 축산농가 대상 권역별 가축보험 설명회 개최 및 축산농가에 가축보험 홍보 팸플릿 배부, 지자체에 포스터 배부,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추진 - 현장간담회, 전문가협의회를 분기별 또는 필요시 실시하고, '상품 개선 협의회'에 안건 상정 - 농금원은 상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상품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 개최시기 : 분기별,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범위 : 농식품부, 보험개발원, 재해보험사업자 등 - 가축재해보험상품 개선협의회는 현장간담회, 전문가협의회를 분기별 또는 필요시 개최 -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 보험사 내부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시스템(농식품부의 재해보험 통합 관리시스템·농금원의 지방비 관리 시스템·보험개발원의 할인·할증 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익년 시·도 및 시·군·구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한도, 지원등수 한도 등 지자체 지원기준을 파악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12월 중순까지 통보, 재해보험사업자는 12월 말까지 내부시스템에 입력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지역 대리점과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평가인 등 대상 교육, 홍보, 운영비 집행 등 세부계획 수립(분야별·월별 추진계획 포함) 후 농금원을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12월 말) - 가축재해보험제도 개선사항 관련 축종별 단체, 지자체, 낙·축·농협, 수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설명회 개최 - 축협 등 대리점을 통하여 선착순 지원, 갱신계약 시기 도래 등 사전 안내 - 전체 영업점에 가축재해보험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부착·비치, TV 광고, 보도자료, 기획기사, 기고 등 홍보 실시 - 사업대상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대상가축 : 소,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광산조), 기타 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8일까지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및 시·도별 가입 현황, 보험금지급 실적(계약건별 상세내역 첨부),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별) 정산요청 및 정산처리실적 등 월보를 농금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전산화를 추진하고 보험가입 시 국비·지방비를 제외한 농가부담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가축재해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부, 농금원, 보험개발원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 -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에 적정하게 가축재해보험사업 운영 및 축협 등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경된 사업 시행지침 사전 교육 실시 - 축산농가에서 보험가입 요청 시 축산업 등록증 등 지원제한, 지자체별 지원기준, 제외대상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지방비 지원 비율, 농가당 지원한도에 맞게 보험료 계산 및 농금원 지방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방비 자동 배정 - 지자체에서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처리를 위하여 전화 또는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부적격자 지원 취소 등 변경 요청 시 즉시 확인하여 조치 후 3일 이내 회신 - 지자체에서 정산 및 이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 현황 등 정확한 자료를 1일 단위 업그레йд 실시 11월분까지는 12월 말까지 정산완료하고 12월분은 이월하여 익년 1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현황, 자료 등 요청 시 적극 협조
-------------------	---	--	--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 지방비 예산은 농금원 지방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실시간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자체별 예산은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전체 보험사 중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 지원·관리 - 매월 지자체 가입실적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지자체 정산 요청서 공문 통보 시(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 지자체 예산잔액·미정산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보 및 재해보험사업자 점검·관리 • 지원된 지방비 정산요청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 현황을 관리하고, 지연된 시·도 및 시·군·구는 특별관리 •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정산 현황을 알기 쉽도록 메뉴 정상화 및 유지보수 관리 철저 •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의 월보 제출 실적, 지자체 매월 정산요청 내역과 시스템상 지자체 보험가입실적 합계, 농금원 지방비 관리시스템상 지방비 잔액이 일치되도록 현황 관리 • 매월 월보와 정산내역은 재해보험 사업자의 가족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금액 및 배분(국비, 시·도 지원, 시·군·구 지원, 농가자 부담)의 적정성, 지원 대상의 적정성, 보험료 할인·할증 반영 등 사전 적정성 검증 후 농식품부 보고 및 지자체에 정산 내역 통보,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폭염·폭설 등 재해, 방역 등 집중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보험사고 접수 현황(계약자, 추사소재지, 추종, 폐사두수, 추정보험금 등) 요청 시 보험사 자료를 받아 매일 현행화하여 농식품부 보고,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발송한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익년 1월 말까지 입금하고, 예산 조기 소진 등 사유로 지자체에서 요청 시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 후 예산으로 재사용 •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자체 시스템에 개인별·지자체별·영업점별 보험가입 현황, 시·도 및 시·군·구 지원 현황 및 환급·추징 등 계약변경 현황 등을 관리하고 관련 자료 송부 - 시스템상 송부한 자료와 매월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 송부한 월보가 일치되도록 현황 관리 - 농식품부, 농금원 및 지자체에서 지원된 보조금 정산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상 송부하는 자료 추가



3. 자금배정 단계	•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족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배정 - 전년도 사업 시행자의 보험 가입률과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월별 가입 현황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적정성 여부 보고 •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의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및 자금집행 - 자금배정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자,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교부신청액 및 교부조건 등 포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금원에 보고
------------	---	--	---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수시) 재해보험사업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우) ▼ 자금배정(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집행 재해보험사업자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농금원·손보사(정책보험팀)
 - (조사) 손보사(감사·SIU)
 - (수사) 경찰청(수사국 수사1과)·금융감독원(보험조사국 손해보험 조사팀)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농금원은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
 - 개최시기 : 반기별,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범위 : 농식품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업 시행자, 손해평가법인 등
 - 점검내용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가 ‘경계·심각단계’의 보험금 청구건으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가족재해보험 실태 점검·조사, 보험사고 혐의자 수사의뢰,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내용 :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등 자금집행실적 및 운영 현황, 국고보조금 지원의 적합 여부, 부가보험료(사업운영비, 사업수수료) 세부항목별 집행실적과 사용내역, 보험사업 목적의 사용, 보험금지급심사 적정성, 가족재해보험 사업 추진 계획 및 시행지침 이행 여부, 자체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 점검결과 :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 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 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실시
 - 철저한 사업 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분기별 위험관리상황을 농금원 경우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가 제시한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는 실태점검 실시 또는 수사 의뢰
 - 신호단계(보험금 청구횟수 및 지급액)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농가별 개인/법인, 지점별 구분, 위험단계 기준은 사고 발생수 및 보험금지급액 동시 만족시 적용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중 경계·심각 신호단계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안건은 매 분기별 또는 필요시 위험관리 점검회의 상정

	구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사고 발생수 및 보험금 지급액	개인 (5회 이상)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상
	법인 (7회 이상)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지점 (30회 이상)	5억 원 이상	7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	11억 원 이상
조치사항		5억 원 이상	7억 원 이상	실태 점검 9억 원 이상	실태점검 또는 수사의뢰 11억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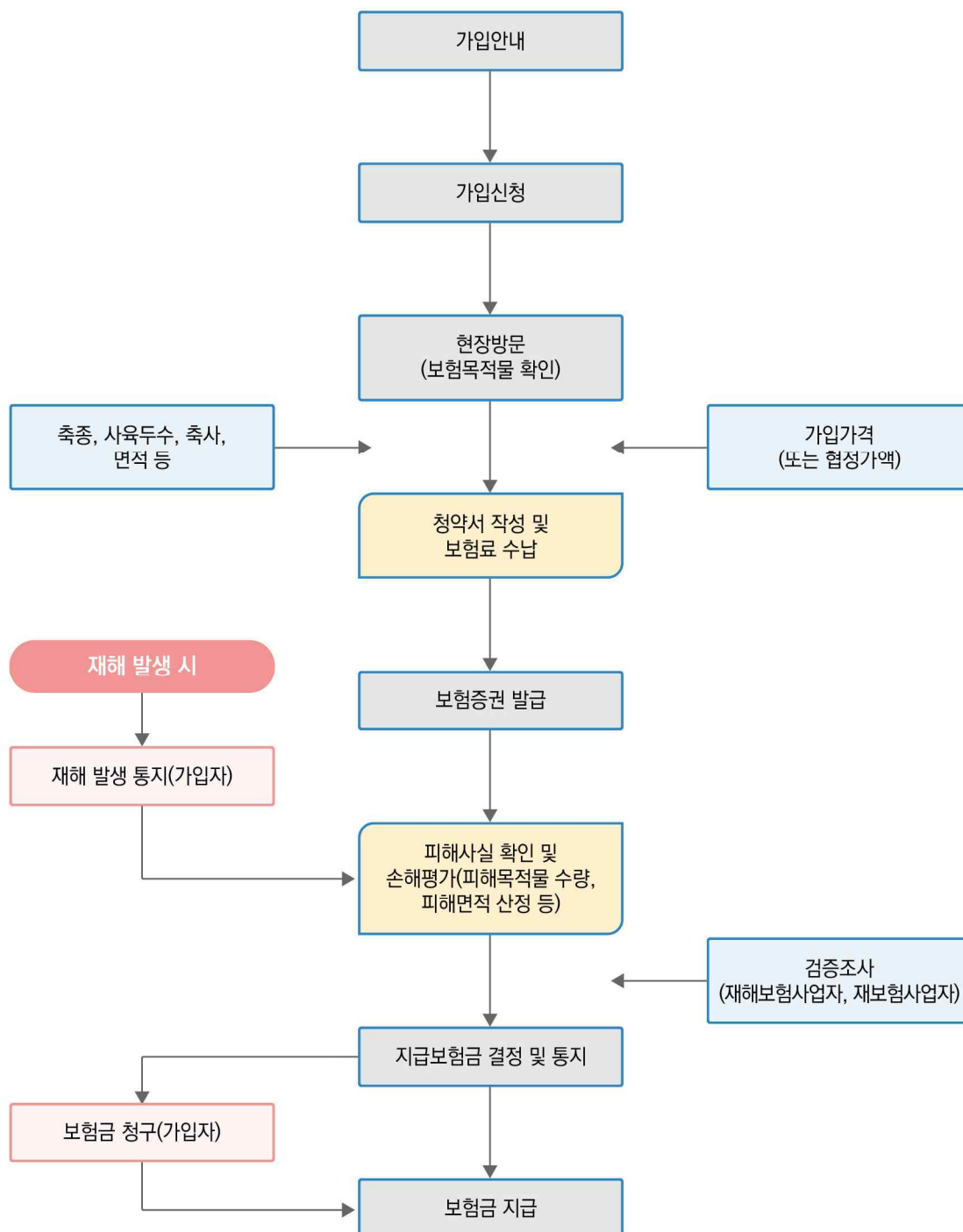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횟수 및 보험금지급액 초과로 경계 이상 단계인 개인, 법인, 지점에 대하여 자체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분기 말까지 실태점검 실시
 - 자체 실태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자체 실태점검이 미흡한 경우 또는 위탁심사를 추진한 경우 농금원에서 재해보험사업자 본사 서류점검 후 현장점검 실시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제재〉	-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 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 시행자 등에게 통보 - 농식품부는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게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허위 또는 가공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보험계약자(피해보험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보험사고 관련 해당 대리점·영업점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각각 수수료 감액조치 등의 제재를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 및 관련된 수의사 명단 등을 위험관리 점검회의 시에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보험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군·구 관할 전체 영업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성과측정 단계 〈성과지표측정〉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측정(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실적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 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 지침에 반영 - 주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조사시기 및 대상 : 사업기간 중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 조사 - 결과제출 : 10월 말까지 조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 통보 전 정책 반영)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 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1월 중) - 사업 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환류〉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3.2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6]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도



4. 가축재해보험상품(16개 축종)

가축재해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목적물 전부(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 가입 가능).

[표 1-1-4]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구 분	소 ¹⁾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	축사
	I (송아지)	II (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15일~12개월 미만	12개월~13세 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납입 보험료의 0~40% 지자체 지원							

주 : 1)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함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소	주계약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재·수재·설해,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 도축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 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소 도난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60%, 70%, 80% 보상 중 선택
		종모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특약	소도체 결함보상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 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 보상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 : 50만 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 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돼지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돼지	주계약	돼지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5%, 90%, 80% 보상 중 선택
	특약	질병위험 보장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 원 중 적은 금액
		축산휴지 위험보장	• 풍재·수재·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전기적 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100·200·300·400·500만 원
		폭염추가 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협정 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 : 50만 원 차감 후 보상
	설해부담보특약		• 설해 담보 제외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 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말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말	주계약	경주마, 육성마, 종빈매(암), 종모매(수)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 까지 보상(단, 경주마는 경기장 외는 가입금액 70%까지 보상, 경기장 내는 95%, 90%, 80%, 70% 보장 중 선택)
	특약	말 운송 위험담보	• 말 운송 중 발생하는 주계약 보상사고	
		씨수말 번식첫해 담보	• 종모매(수컷)의 번식장애 보상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 : 50만 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 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금	주계약	모든 가금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5%, 90%, 80%, 70%, 60% 보상 중 선택 * 폭염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과 100만 원 중 큰 금액
	특약	전기적 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100·200·300·400·500만 원
		폭염 부담보	• 폭염 담보 제외	
		협정보험 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 : 50만 원 차감 후 보상
	설해부담보특약		• 설해 담보 제외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 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기타 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기타 가축	주계약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사슴, 양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꿀벌, 토끼, 오소리는 95%)
	특약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 (사슴, 양만 해당)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재·수재·설해,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 까지 보상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 화재 : 50만 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4절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 개관

1.1 사업목적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보험제도이다.

1.2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1.3 사업대상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대상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을 대상으로 하며,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작업 수행을 위해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를 고용(90일 미만)한 경영주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농기계종합보험은 사업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4 추진경과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였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1989년부터 농작업상해공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1991년부터는 농기계종합공제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1996년부터 농업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농가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험품목 및 보상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수준을 고려한 상품 유형 통합(총 7종 → 4종) 및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도입 등을 완료하였다.

또한, 영세농업인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강화(50% → 70%)하였다.

연 도 별	주 요 내 용
1989년	• 농협중앙회 '농작업상해공제' 사업 실시
1996년	• '농작업상해공제' 정부 지원으로 농업인안전공제 도입 - 문민정부 대선공약으로 보험료의 50% 정부 지원
2007년	• 임업인공제 실시
2012년	• 농·임업인안전보험으로 명칭 변경 - NH농협생명으로 사업자 변경
2014년	• 농업인안전보험 경쟁체제 도입·민영 보험사(KB손해보험) 참여 허가
2015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5.1.6) 제정
2016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6.1.6) 시행 • 임업인안전재해보험을 폐지하고 농업인안전보험으로 통합
2017년	• 생존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4형 개발 및 출시
2018년	•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확대한 산재형 개발 및 출시
2019년	•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 강화(50% → 70%) • 교통재해사망특약, 재해골절특약 개발 및 출시
2020년	• 상품 유형 통합(7종(일반5·산재2) → 4종(일반3·산재1)) • 사망보험금지급연장특약 도입

연 도 별	주 요 내 용
2009년	•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제도 도입 • 9개 시·군에서 시범사업 시작 – 김포, 춘천, 충주, 예산, 안동, 의령, 고창, 해남, 남제주
2010년	• 17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지역 확대 – 안성, 원주, 음성, 아산, 익산, 나주, 영주, 창원 추가
2011년	• 28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지역 확대 – 용인, 인제, 제천, 옥천, 공주, 논산, 순창, 김제, 순천, 김천, 함양 추가
2012년	• 40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지역 확대 – 영동, 장성, 광양, 의성, 예천, 경산, 문경, 거창, 진주, 창녕, 김해, 부산 강서구 추가
2014년	• 본사업 실시(사업지역 전국으로 확대)
2018년	• 사업 명칭 변경 – (기존)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변경)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2019년	• 가입연령 확대 – (기존) 만 20~87세 → (변경) 만 15~87세

◆ 농기계종합보험

연 도 별	주 요 내 용
1991년	• 농협중앙회 농기계종합공제 사업 실시
1996년	• 농기계 6개 기종으로 농기계종합보험사업 시작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정부 지원 실시
2008년	• 가입대상 농기계 9개 기종으로 확대 - 광역방제기, 베일러, 항공방제기 3개 기종 추가
2009년	• 가입대상 농기계 12개 기종으로 확대 - 농용골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3개 기종 추가
2012년	• 대인, 대물, 자기신체담보 등의 특약 리모델링
2013년	•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자기부담금 다양화 - (기존) 300만 원 단일 → (변경) 100·200·300만 원 중 선택
2014년	• 국고보험료 지원 변경 - 가입금액 기준 5,000만 원까지 50% 지원(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2015년	• 대물배상담보 보상한도의 다변화 - (기존) 2천만 원 단일 → (변경) 2,000·5,000·10,000만 원 • 항공방제기 비행 중 보상한도 개선 - (기존) 1억 원 고정 → (변경) 계약자가 정한 보험가입금액
2016년	•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50% 국고 지원 실시
2017년	• 대인배상 I·II를 통합하여 대인배상으로 일원화 • 할인·할증제도 개선 - (기존) 90~200% → (변경) 70~220%
2018년	• 보험료 국고 지원기준 개정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 국고 지원 • 농기계 사고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 도입
2019년	• 손해율·평균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별 자기부담금제도 개선 - (대상) 콤바인·베일러·광역방제기·항공방제기
2020년	•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 강화(50% → 70%) • 보험료 국고 지원기준 개정 - 주요 안전장치가 모두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국고 지원('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대상)

1.5 보험별 운영 현황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인원수는 2017년(695천 명) 저점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가입인원은 858천 명으로 전년(824천 명)보다 4.2% 증가하였다. 또한, 총 보험료도 1,044억 원으로 전년(938억원)보다 증가하였다.

2020년 지급보험금은 802억 원으로 전년(780억 원)보다 2.9% 증가하였으나, 손해율은 90.4%로 전년(97.9%) 대비 7.5%p 하락하였다.

[표 1-1-5] 연도별 농업인안전보험 운영 현황(2001~2020)

(단위 : 천건, 천명, %, 억원)

구 분		2001~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단위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보험가입 실적	건수	663~754	758	747	745	720	712	678	641	730	769	805
	인원수	…~804	817	803	805	778	771	737	695	785	824	858
	가입률	…~50.4	53.8	52.5	55.7	55.2	56.1	55.0	53.2	61.6	63.1	64.0
보험료	총 보험료	148~600	674	664	672	629	626	825	777	860	938	1,044
	위험보험료	…~509	572	564	571	535	532	701	660	731	797	888
보험금 지급 실적	건수	13~23	25	26	33	36	32	35	69	82	89	88
	보험금	119~425	446	474	516	488	478	477	525	653	780	802
손해율 ¹⁾		…~83.4	77.8	84.0	90.2	91.3	89.8	68.0	79.4	89.3	97.9	90.4

주 : 1) 손해율 : 보험금÷위험보험료×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NH농협생명 농축협사업본부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2009년 전국의 9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하였다. 2014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에서 판매되었으며, 2018년에는 농작업근로자장보보험에서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0년 가입인원은 16천 명으로 전년(22천 명)보다 24.0% 감소하였으며, 총 보험료 또한 163백만원으로 전년(192백만 원)보다 감소하였다. 보험금지급실적은 31백만 원으로 전년(38백만 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손해율은 26.8%로 전년(28.5%) 대비 1.7%p 하락하였다.

[표 1-1-6] 연도별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운영 현황(2009~2020)

(단위 : 건, 명,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단위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본사업	본사업	본사업	본사업	본사업	본사업	본사업
보험 시행 시범 지역	지역수 (누계)	9	17	28	40	40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시·군·구	김포, 춘천, 충주, 예산, 안동, 의령, 고창, 해남, 제주	안성, 원주, 음성, 아산, 익산, 나주, 영주, 창원	용인, 인제, 제천, 옥천, 공주, 논산, 순창, 김제, 순천, 김천, 함양	영동, 장성, 광양, 의성, 예천, 경산, 문경, 거창, 진주, 창녕, 김해, 부산 강서구	좌동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보험 가입 실적	건수 ¹⁾	5	52	190	338	2,006	5,674	5,736	6,908	14,451	21,519	21,616	16,425
	피보험자수	7	196	1,268	1,954	2,006	5,674	5,736	6,908	14,451	21,519	21,616	16,425
보험료	총 보험료	0.1	1.9	14.0	24.2	23.1	60.9	69.6	113.1	194.6	221.3	192.2	162.5
	위험보험료	...	...	...	16.9	16.1	42.6	48.7	79.1	136.2	154.9	134.6	113.8
보험금 지급실적	건수	-	-	3	5	11	16	26	34	94	100	88	89
	보험금	-	-	1.8	6.3	5.8	16.2	28.7	24.5	31.6	34.5	38.4	30.5
손해율 ²⁾		-	-	13.0	25.9	30.5	37.9	48.5	31.0	23.2	22.3	28.5	26.8

주 : 1) 가입건수는 2013년부터 피보험자 1명당 1건으로 계산함

2) 손해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금÷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100, 2013년 이후 보험금÷위험보험료×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NH농협생명 농축협사업본부

◆ 농기계종합보험

1996년 농기계 6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을 시작한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개 기종을 추가하여 현재는 12개 기종에 대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20년 가입건수는 116천 건으로 전년(102천 건) 대비 약 12.9% 증가하였으며, 2020년 총 보험료는 563억 원으로 전년(466억 원)보다 20.9%가 증가하였다.

보험금지급실적과 손해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보험금지급액 433억 원, 손해율 90.5%로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되었다.

[표 1-1-7] 연도별 농기계종합보험 운영 현황(2001~2020)¹⁾

(단위 : 천건, %, 억원)

구 분		2001~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험대상 농기계	기종수 (누계)	12										
	신규도입	경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SS분무기광역방제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사업단위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보험가입 실적	건수	12.5~31.7	29.0	32.9	40.2	43.2	52.1	60.4	79.5	93.5	102.4	115.6
	가입률	0.6~2.6	1.5	1.7	3.4	...	...	...	...	...	...	...
보험료	총 보험료	12~99	115	130	169	202	244	274	384	520	466	563
	위험보험료	...~84	97	108	142	170	201	229	325	440	396	479
보험금 지급실적	건수	0.7~2.6	2.9	2.6	4.0	5.1	7.0	8.3	10.6	11.1	14.3	13.9
	보험금	13~70	77	98	134	167	211	263	335	422	487	433
손해율 ²⁾		...~83.7	80.2	89.0	94.8	98.5	104.6	115.1	103.3	95.9	123.1	90.5

주 : 1) 지자체 일괄 계약 실적은 제외

2) 손해율 : 보험금÷합금 차감 후 보험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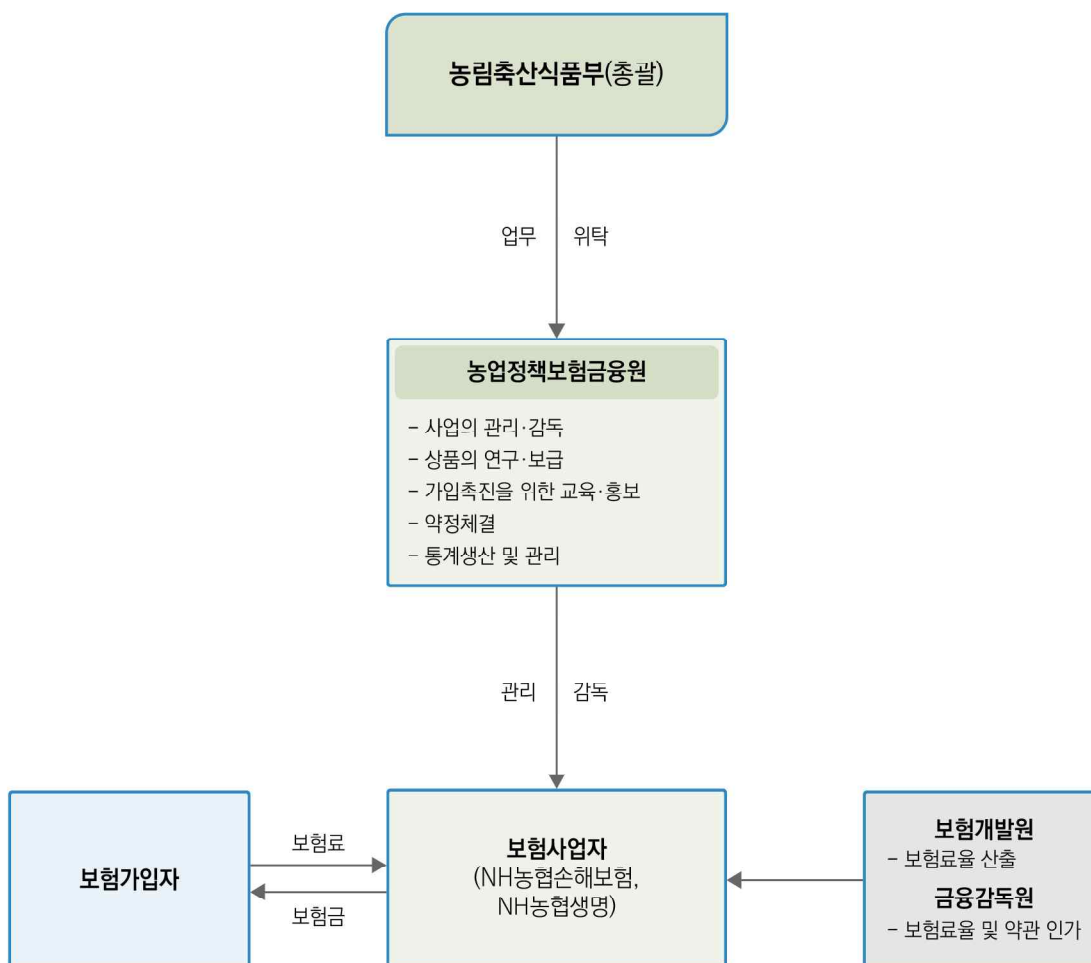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단

2. 운영 체계

2.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 체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지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약정 체결, 통계 생산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농기계)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주체가 되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산출 또는 검증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율과 약관 등 기초서류를 신고 수리하고 있다.

[그림 1-1-7]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 체계도(농업인, 농작업근로자, 농기계)



2.2 기관별 주요 역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기 관	주요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관 및 보조금 지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가입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약정체결, 통계 생산 및 관리 등
금융감독원	기초서류 신고 수리, 금융분쟁의 조정(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보험개발원	보험료율 산출 및 검증
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	보험사업의 운용 및 관리

3. 추진 절차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3.1 표준프로세스(SP)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 수립, 준비, 사업비 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등 표준프로세스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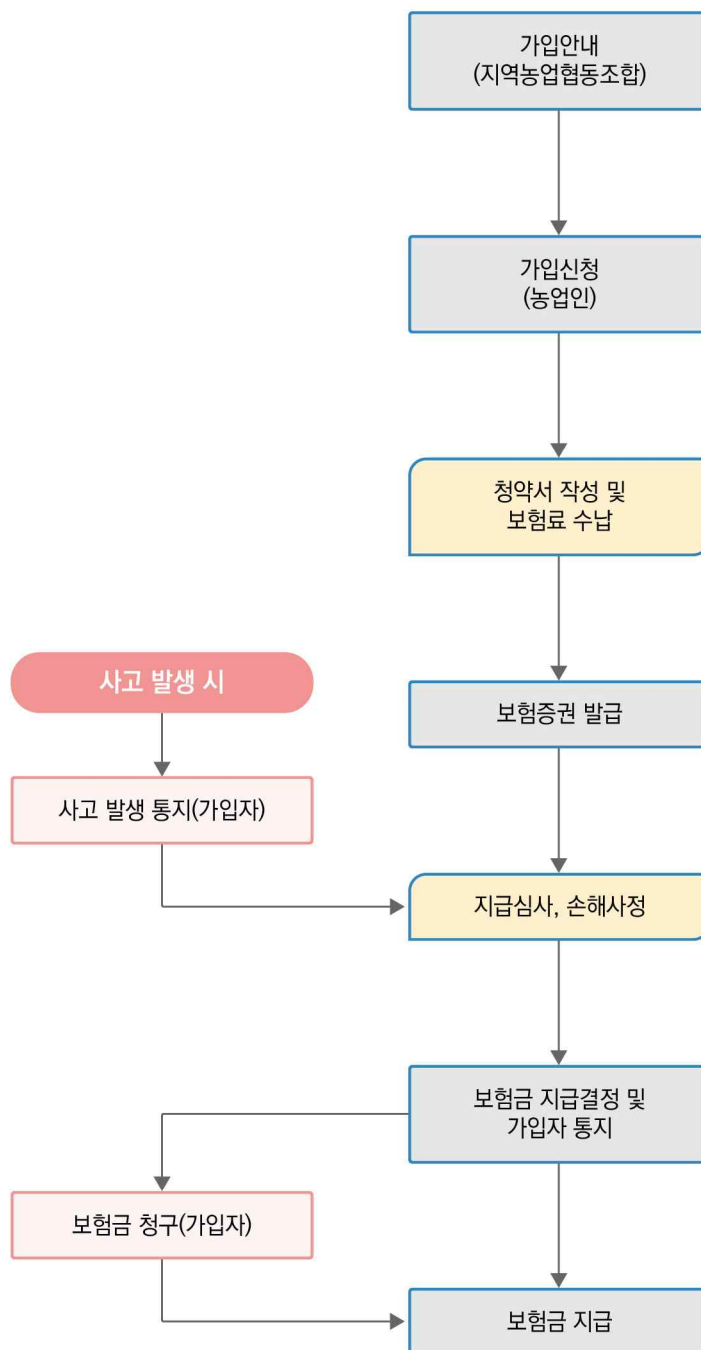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보험가입자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보험사업자에게 전달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 개선회의 운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제도 홍보, 통계관리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 -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 체결 실시	- 자격요건 -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사업계획의 수립 -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필요 경비 등이 포함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약정 체결 -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 체결 시 사업계획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서류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2. 사업준비 및 시행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 개선회의 운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제도 홍보 등 추진 - 상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상품 개선회의'를 구성·운영 - 조직구성 : 농식품부, 농금원, 보험사업자 등 - 개최시기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각 반기별 2회(단, 필요시 수시 개최)	- 사업시행 - 보험사업자는 농식품부의 세부 사업 기본계획 및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농업인 등에 대한 정책보험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제도 개선 사항 안내·교육 실시 - 주요 변경사항의 사전 합의 - 보험료율 및 보험약관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 금융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3. 보험가입			- 청약서 등 가입 관련 서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국고 지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각 개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보험가입자
4.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 -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지급 신청 -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 보험사업자가 배정된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	• 보험사업자의 가입현황서,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험 가입현황서를 농민원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정산 - 보험사업자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 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익년도 2월 28일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익년도 4월 30일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6.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가입 및 지급실태,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및 일정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보험금지급 현황, 보조금 사용 내역 등 - 사업실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 보험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지급 절차, 국고 지원 내역 등을 보험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지역 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보험가입자
7. 제 재		• 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보험사업자 등에 요구	• 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8. 성과측정	• 성과지표측정 - 성과지표 달성 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보험사업자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9. 사업평가 및 한류단계	가. 원칙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익년 3월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는 매 연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가입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부진 항목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 류〉	• 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 안내부터 청약, 사고 발생 통지, 지급심사 및 손해사정, 보험금지급 등의 절차는 <그림 1-1-8>과 같다.

[그림 1-1-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지급 절차도



4. 농업인안전재해보험상품

4.1 농업인안전보험 보장내용

급 부	지 급 사 유	일반형			산재형
		1형	2형	3형	
유족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6,000만 원	9,000만 원	7,500만 원	1.2억 원
장례비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100만 원			1,000만 원
고도장해 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5,000만 원	9,000만 원	7,500만 원	1.2억 원
재해장해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 이상 80% 미만 장해 시	5,000만 원 ×장해율	9,000만 원 ×장해율	-	1.2억 원 ×장해율
간병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 이상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500만 원			5,000만 원
휴업(입원)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 원	3만 원	2만 원	6만 원
재활 (고도장해) 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500만 원			3,000만 원
재활 (재해장해)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 이상 80% 미만 장해 시	500만 원×장해율		-	3,000만 원 ×장해율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30만 원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시	30만 원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입원 1천만 원 한도)			(입원 5천만 원 한도)
		(통원 20만 원, 처방 10만 원 한도)			
		(도수치료 350만 원, 주사료 250만 원, MRI 300만 원 한도)			

자료 : NH농협생명 농축협사업본부

(1) 장제비지원 특약

(2) 농(임)업인재해사망 특약

(3) 교통재해사망 특약

(4) 재해골절 특약

(5)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급 부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해당계약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이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해당계약에서 '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4.1.2. 보험료 및 예시

(1) 주계약(일반형)

(1구좌 가입기준, 단위 : 원)

구 분			일반형			산재형
			1형	2형	3형	
개인형	기본형	영업보험료	101,000	134,100	98,600	194,900
		정부 지원액	50,500	67,050	49,300	97,450
	상해·질병 치료비 부(不)담보형	영업보험료	62,200	95,300	59,900	155,700
		정부 지원액	31,100	47,650	29,950	77,850
부부형	기본형	영업보험료	202,000	268,200	197,200	389,800
		정부 지원액	101,000	134,100	98,600	194,900
	상해·질병 치료비 부(不)담보형	영업보험료	124,400	190,600	119,800	311,400
		정부 지원액	62,200	95,300	59,900	155,700

(2) 선택 특약

(단위 : 원)

구 분	가입금액	보험료	
		개인형	부부형
장제비지원 특약	100만 원	9,600	19,200
	300만 원	28,800	57,600
재해사망 특약	1,000만 원	9,900	19,800
교통재해사망 특약	1,000만 원	4,500	9,000
재해골절 특약	10만 원	5,300	10,600

4.2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보장내용

급 부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유족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 원
장례비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100만 원
고도장해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1,000만 원
재해장해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 이상 80% 미만 장해 시	1,000만 원×장해율
간병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 이상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500만 원
휴업(입원)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 원
재활(고도장해)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500만 원
재활(재해장해)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 이상 80% 미만 장해 시	500만 원×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30만 원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시	진단 1회당 30만 원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치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 보장	
	농작업 중 질병 또는 상해 입원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4.2.1 보험료 및 예시

(단위 : 원)

구분 (보장기간(일수))	기본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영업보험료	정부 지원액	영업보험료	정부 지원액
1~2	3,100	1,550	1,200	600
3	3,800	1,900	1,500	750
4~5	6,100	3,050	2,400	1,200
6~7	7,700	3,850	3,000	1,500
8~10	8,400	4,200	3,200	1,600
11~14	10,000	5,000	3,800	1,900
15~17	10,700	5,350	4,100	2,050
18~21	12,300	6,150	4,700	2,350
22~24	13,000	6,500	5,000	2,500
25~27	14,600	7,300	5,600	2,800
28~30	15,300	7,650	5,900	2,950
31~45	18,400	9,200	7,100	3,550
46~60	23,000	11,500	8,900	4,450
61~89	30,600	15,300	11,800	5,900

4.3 농기계종합보험(12개 기종)

구 분	농기계종합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작연도	1996년	
사업형태	본사업	
사업지역	전국	
보험대상 농기계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보장내용	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사업대상자 (국고 지원자격)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가입단위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보험기간	1년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약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 원칙	
국고보조	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보험료의 50% ¹⁾ (영세농 70%)

주 : 1)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 원까지 보험료의 50%, 5천만 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단

(1)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1)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기종	농기계손해		자기부담금	자가신체사고 (1억원)	자가신체사고Ⅱ (1억원)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억원)	
트랙터	가입금액×1.01%		손해액의 20% (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	35,370원	53,130원	38,660원	55,060원	
콤바인	가입금액×3.13%		50만 원	25,540원	37,130원	9,750원	10,640원	
경운기	가입금액×0.48%		손해액의 20% (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	35,370원	53,130원	8,280원	14,200원	
SS분무기	가입금액×1.28%			25,540원	37,130원	9,750원	10,640원	
승용관리기	가입금액×0.8%			35,370원	53,130원	8,280원	14,200원	
승용이앙기	가입금액×0.94%			25,540원	37,130원	9,750원	10,640원	
광역방제기	가입금액×2.43%			35,370원	53,130원	38,660원	55,060원	
베일러	가입금액×1.65%		100만 원	35,370원	53,130원	38,660원	55,060원	
농용굴삭기	가입금액×0.48%		손해액의 20% (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	35,370원	53,130원	38,660원	55,060원	
농용동력운반차	가입금액×1.21%			35,370원	53,130원	38,660원	55,060원	
농용로우더	가입금액×0.40%			35,370원	53,130원	38,660원	55,060원	
항공방제기	비행 중 위험		19.16%	100만 원	35,370원	53,130원	1,155,290원	55,060원
	비행 외 위험	1억 이하	3.88%					
		1억 초과	7.53%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단

[그림 1-1-9]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

 동력경운기 견인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장착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자주식 원동기계. 다만, 특수한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	 광역방제기(원거리용)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 탱크, 농약 살포장치 및 송풍장치 등을 갖춘 원거리용 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작업에서 사용되는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농용(승용형) 동력운반차 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적재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된 운반기계.
 농용로우더(loader)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농용베일러(baler) 벼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묶는 자주식 또는 피견인식의 농업용 베일러(랩 피복기 겸용형 포함).